

# 서울그린캠퍼스 공동추진 양해각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특별시는 그린캠퍼스 조성을 통한 기후환경수도 서울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그린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협약기관 간의 역할, 권리와 의무 등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협력범위)** 협약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상호간의 관심과 필요에 근거하여 인적·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폭넓은 협력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며, 본 협약에 의한 각종 사업은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.

**제3조(협업분야)**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상호 노력한다.

1. 저탄소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·교육 공동추진 및 지식·정보 교환
2.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노력
3.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
4. 대학 내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위한 상호 협력
5. 저탄소 인프라 조성 및 녹색교정 조성을 위한 협력
6. 대학의 녹색생활 실천 및 지역사회 전파를 위한 협력
7. 기타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협력사항

**제4조(에너지절약)**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2017년까지 에너지소비량을 10%(2012년 대비, 건물면적 당) 줄이는 데 적극 노력하고, 서울시는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
**제5조(상호협약)** 캠퍼스 조성을 위한 협력에 있어서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각 기관의 각종 제도 및 규정을 존중하며, 협력사업은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한다.

**제6조(협약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)** ① 본 협정은 서명 날인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본 협정은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내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으로 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을 연장한다.

**제7조(협약서의 변경)** 본 협약서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사안이 발생할 시 협약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.

**제8조(기타)**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한 후 협약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6월 25일



서울교육대학교총장  
신항균



서울특별시시장  
박원순

신항균

박원순